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
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정애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바젤협약 금지 개정안(유해폐기물의 OECD, EU, 리히텐슈타인 외 국가로의 수출금지)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폐기물 포괄 수출입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(신고)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(안 제3조제1항, 제9조제1항, 제17조의2제1항, 제17조의2제2항)

법 제6조제5항, 제10조제6항,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한꺼번에 수출입 허가(신고)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할 때마다 관세청에 수입신고 10일 전까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

나. 바젤협약 금지개정안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수출금지 규정 명확화(안 제18조의2)

바젤협약 수출금지 개정안(OECD, EU, 리히텐슈타인 외의 국가로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) 조문에 맞춰 “폐기물”을 “유해폐기물”로 명확

히 규정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의2 중 “서류(제7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)”를 “있는 서류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7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 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하며,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「관세법」

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제9조제1항제4호의2 중 “서류(제10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)”를 “서류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0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 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하며,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「관세법」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제17조의2제1항제7호 중 “서류”를 “서류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「관세법」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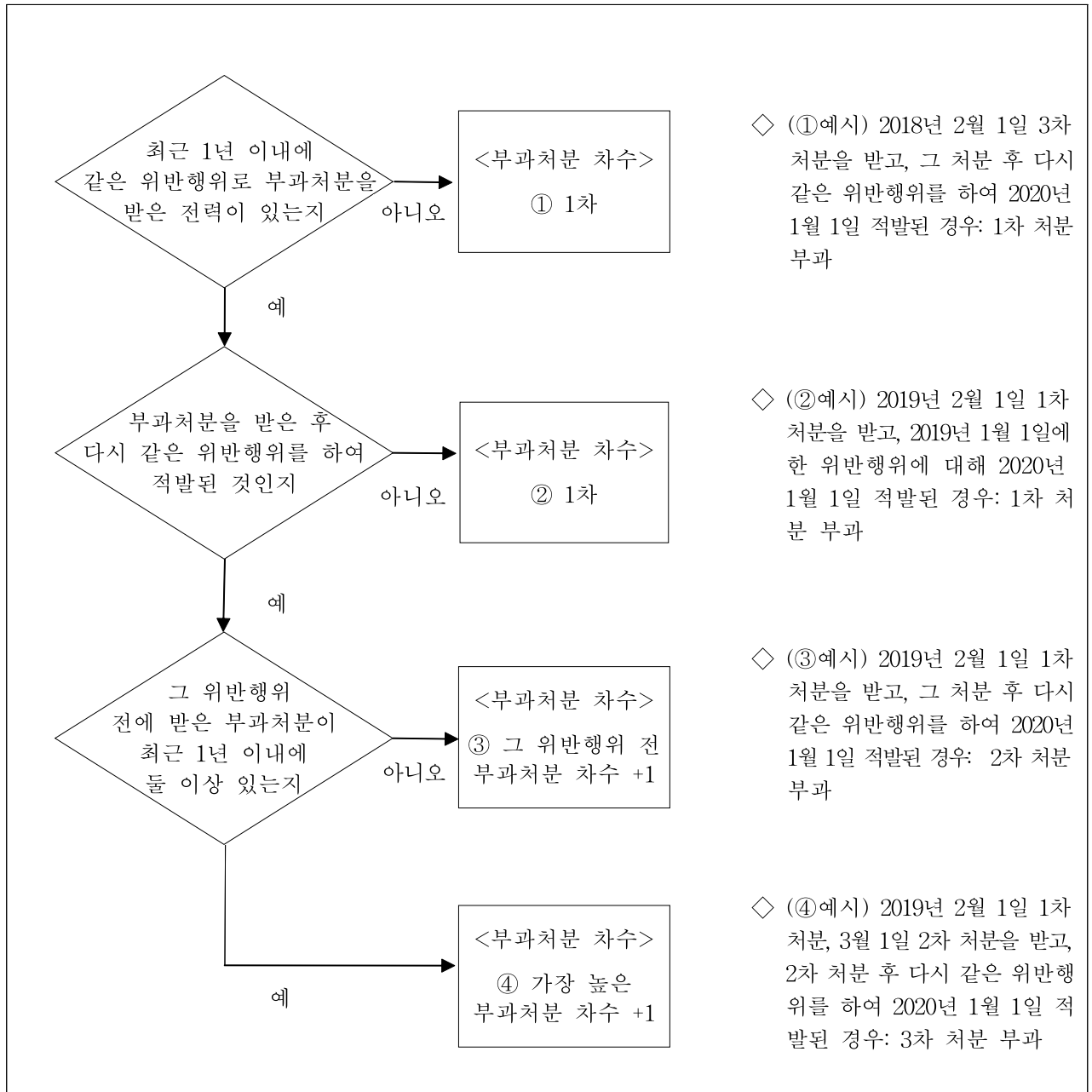
제17조의2제2항제11호 중 “서류”를 “서류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「관세법」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하여 폐기물”을 “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”로, “각호의”를 “각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별표 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



별지 제1호서식 제2쪽 바목 중 “제외합니다”를 “제외하며,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「관세법」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제2쪽 마목 중 “제외합니다”를 “제외하며,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「관세법」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의2서식 사목 중 “서류”를 “서류.”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「관세법」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차목 중 “서류”를 “서류.”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「관세법」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기물수출금지국가에 관한 경과조치)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부속서 7이 우리나라에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제18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중 “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,

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"을 "협약 당사국가"로 본다.

제3조(수출입규제 폐기물의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) 제3조 제1항제5호의2 및 제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수출입규제 폐기물의 수출 허가) ①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 폐기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 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3조(수출입규제 폐기물의 수출 허가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5의2.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제7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)	5의2. ----- ----- ----- ----- 있는 서류. 다만, 제7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하며,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 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「관세법」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<단서 신설>	

6. ~ 8. (생략)

② ~ ⑧ (생략)

제9조(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허가)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4의2.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제10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) <단서 신설>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허가) ①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4의2. -----

----- 서류. 다만,
제10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
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
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
제외하며, 법 제10조제6항에
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으려
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
수입할 때마다 「관세법」 제
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
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
수 있다.

5. ~ 11. (생략)

② ~ ⑦ (생략)

제17조의2(수출입관리폐기물의
수출입 신고 등) ① 법 제18조
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
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
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
리폐기물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
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
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
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
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
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
명할 수 있는 서류 <단서 신
설>

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
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
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
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

5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수출입관리폐기물의
수출입 신고 등) ①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----- 서류. 다만, 법
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한꺼
번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
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할 때
마다 「관세법」 제241조에
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
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② -----

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
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
제출해야 한다.

1. ~ 10. (생략)

11.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
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
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
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
명할 수 있는 서류 <단서 신
설>

③ ~ ⑦ (생략)

제18조의2(수출금지 국가)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.

1. · 2. (생략)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-----

----- 서류. 다만, 법
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한꺼
번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
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할 때
마다 「관세법」 제241조에
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
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2(수출금지 국가) -----
----- 따
라 수출입규제폐기물-----
----- 각호에 따른 -----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생활폐기물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427